

제13주

* 컴백홈 v. 컴배콤 사례 서울민사지법 2001. 11. 1, 2001카합1837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2년경 '○○○○○○○○'이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서○○'라는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하면서 1995. 10. 6.경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이라는 음악저작물(이하 편의상 이 사건 원곡이라고 한다)을 창작한 작사자 겸 작곡자이고, 피신청인 이○○은 '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며, 피신청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피신청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신청인 이○○이 소속되어 있는 음반제작회사이다.

나.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원곡의 가사 중 일부를 추가·변경하는 방법으로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가사를 변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원곡의 악곡과는 음정과 박자를 일부 달리하는 노래(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개사곡이라 한다)를 녹음하고 이를 별지 제1 목록 기재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에 포함시켜 제작·판매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음반과는 별도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출연한 이 사건 원곡에 관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던 감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사곡을 담아 피신청인 이○○이 원래의 뮤직비디오에서의 신청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출연하면서 일부 장면만 변형되고 대부분의 내용이 원래의 뮤직비디오와 유사한 내용의 뮤직비디오(이하 이 사건 뮤직비디오라 한다)를 "○○○○"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하여 방송·전시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및 법원 판단

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채 이 사건 원곡을 이 사건 음반과 뮤직비디오에 삽입하고, 그러한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판매, 공연, 방송, 전시함으로써 신청인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원곡의 창작 후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여전히 신청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

한편 뮤직비디오는 하나의 영상저작물로서 감독·연출 등을 담당하여 이를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원곡에 관한 원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위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신청인이 위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자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며, 한편 위 뮤직비디오의 제작에 사용된 이 사건 원곡의 저작재산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신탁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원곡 및 뮤직비디오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

(1) 성명표시권

신청인은 다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을 그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이 사건 원곡의 저작자가 신청인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저작물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고, 성명표시의 생략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음반부분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후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음반에 이 사건 원곡의 작사·작곡자가 신청인이라는 것을 서○○라는 예명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다른 점을 더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더 이상 신청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뮤직비디오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자에게 그 저작재산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신청인들이 위 뮤직비디오의 제작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권리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로서 신청인이 출연한 원래의 뮤직비디오를 보더라도 그것에 신청인이 이 사건 원곡의 작사·작곡자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

하고, 뮤직비디오의 제작관행상 해당 노래의 저작자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이 뮤직비디오에 신청인이 저작자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동일성유지권

(가) 누구든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題號)에 대하여 무단 변경, 삭제, 개변 등을 함으로써 저작인격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한 노래를 녹음하여 이 사건 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또한 그러한 노래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방송·전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로써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신청인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뮤직비디오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원래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 원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이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뮤직비디오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패러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담긴 진지한 고민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비평이나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 것으로서 이른바 패러디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저작물의 일부 변형은 정당한 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

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 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원곡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가사의 내용 및 그 사용된 어휘의 의미, 추가·변경된 가사내용과 원래의 가사 내용의 관계,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음정, 박자 및 전체적인 곡의 흐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노래에 음치가 놀림받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대중적으로 우상화된 신청인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나,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개사곡에 피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개사곡이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피신청인들이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사곡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뮤직비디오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입에 밴드를 붙이거나 변기에 앉아 추한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연출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뮤직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출연한 원래의 뮤직비디오를 본따 만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장면들은 신청인이 뮤직비디오의 연기자로서 연출한 모습에 대하여 변형을 가한것이어서 신청인의 실제 삶이나 모습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신청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손상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